

##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년 1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1. 1. 29) 및 동법시행령(2001. 4. 30)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7.5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1로 함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함
-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징수관·경리관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으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지출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함.

 의안전문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기타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조례제정 협조공문

##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100분의 7.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100분의 7.5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7.5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1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1
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6호에 의한 사업 : 100분의 1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전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①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⑥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⑦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④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